

상 호 협 력 협 정 서

서울디지털재단(이하 “재단”)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(이하 “KERIS”)은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아래와 같이 교류 협정(이하 “협정”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정은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“재단” 과 “KERIS” 가 상호 협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, 이를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,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 시 별도 협의한다.

1. 양 기관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및 교원,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,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한다.
2. 양 기관은 SW교육, 메이커교육 등 양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3.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에 관한 수요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인적, 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한다.
4. 양 기관은 디지털 세계시민 소양 확보를 통한 공동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3조(정보의 공동활용) 본 협정을 통하여 공동으로 생산한 산출물 및 결과는 양 기관이 국가 교육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생산한 정보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4조(기타 협력) 본 협정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양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달성과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사항 발생시, 상호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.

제5조(재정부담) 양 기관은 본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6조 (협정의 유효기간) 본 협정은 합의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. 양 기관은 본 협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정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 (협정의 효력) 본 협정은 양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, 본 협정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, 쌍방이 서명·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3월 29일

서울디지털재단
이사장 이 치 형



한국교육학술정보원
원 장 한 석 수

